

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
관한 조례안
(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61호
- 나. 제출자 : 도병두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5. 1. 23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1. 23.

2. 제안이유

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상인 육성을 도모하고 상생성장 및 지속가능한 운영을 통해 관내 시장, 상점가, 골목상권 등 상권을 다양화하고 지역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청년상인 육성계획 및 지원사업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업무의 위탁 및 실태조사(안 제7조 및 제8조)
- 마. 지원사업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(안 제9조 및 제10조)

4. 관계법령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6조
- 「청년기본법」 제18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상인 육성을 도모하여 관내 상권을 다양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- 동 제정안은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,
 - 안 제2조에서는 ‘청년상인’의 정의에 대하여,
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,
 -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,
 - 안 제5조에서는 청년상인 육성계획의 수립과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,
 - 안 제6조에서는 청년상인 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하여,
 - 안 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,
 - 안 제8조에서는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 실시 및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요청에 대하여,
 - 안 제9조에서는 지원사업 실적 평가 및 결과 반영에 대하여,
 -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대하여,
 - 안 제11조에서는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-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, 동대문구, 성동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 상인과의 상생 성장을 도모하고 향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선도할 주체로서 청년상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발의된 안건으로,
-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1. 관계법령 1부.

2. 청년상인 및 관련사업 현황 1부. 끝.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[시행 2024. 9. 20.] [법률 제20455호, 2024. 9. 20., 일부개정]

제16조(청년상인의 육성)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
1.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
2. 창업을 위한 교육·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
3. 창업 성공사례 발굴·포상 및 홍보
4.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

[본조신설 2016. 12. 2.]

청년기본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53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18조(청년 창업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,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청년상인 현황

연번	시 장 명	형 태	청년상인(전체점포)	대표점포
1	별 빛 남 문 시 장	전통시장(인정)	7(109)	청 춘 청 과
2	비단길현대시장	전통시장 (등록+인정)	19(193)	육 미 정 담
3	대명여울빛거리	전통시장(+상점가) (등록)	10(236)	규 미 당
4	은 행 나 무 시 장	전통시장 (등록+인정)	0(59)	-
5	독산동 우시장	상점가(등록)	10(117)	두 리 축 산

관련사업

○ **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**(주관 : 소진공, 선정 : 전국 7개소)

1. 주요내용

-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
- 청년몰 공용공간 시설개선,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, 공동마케팅, 공동 수익사업, 자생력 강화 컨설팅, 기술지도 등
- 지원액 : 최대 4억원(국비 50: 지방비 50)

2. 지원대상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의 전통시장·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
- 정부,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(500㎡ 내외)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(청년상인 점포가 60% 이상일 것)

3. 지원신청 : ~ 2025. 2. 14.(금)까지

※ 시장 상인회 → 구 → 시 →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